

2018년 9월 5일(수) 14:00

포스코P&S타워 이벤트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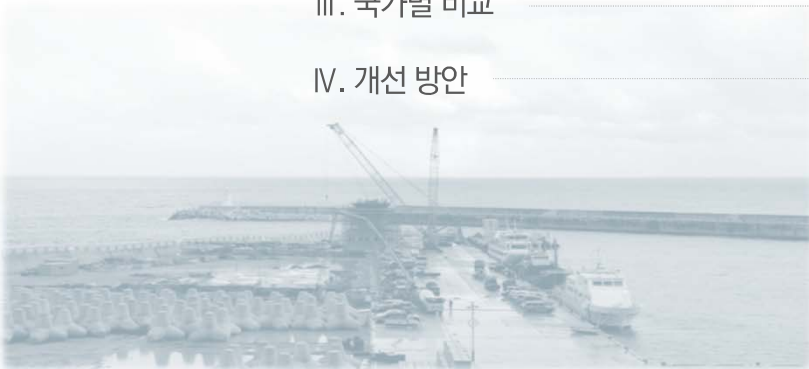
: 연구용역 중간결과

국토연구원



CONTENTS

I. 과업 개요	3
II. 건설생산체계	6
III. 국가별 비교	10
IV. 개선 방안	17



CHAPTER I

과업 개요

1. 배경
2. 접근 방법



1. 배경

건설산업 혁신의 추진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6. 28)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

부족한 기술력과 비효율적 생산구조를 가격 경쟁력과 사업물량 확대 등으로 극복한 양상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4대 혁신방안 추진 발표

- ① 기술 혁신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
- ② 생산구조 혁신 :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
- ③ 시장질서 혁신 : 부실·불법·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
- ④ 일자리 혁신 :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 (7. 25)

노사정이 하나 되어 혁신의 큰 틀에 합의

국토교통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 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선언문 합의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위원장 참여)

생산구조 관련 규제 합리화

- ① 종합·전문업계 상호 시장 진출하면서 업역 갈등을 해소
- ② 건설업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및 업종 분쟁 최소화
- ③ 시공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등록기준 개선 협력

⇒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 중 구체화

2. 접근 방법

연구 내용 및 방법

국내 건설업 생산체계(업역, 업종, 등록기준 중심) 진단

건설생산체계의 특성 및 성과 평가

주요 선진국의 건설업 생산체계 사례 분석 및 연구

일본, 미국 등 국가별 건설 생산체계 비교

업역, 업종, 등록기준 및 현장의 작동 과정 분석

국내 건설업 생산체계 개선안 도출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안 제시

관련 지식 확산 및 논의 지원

관련 전문가 집단 대상 논의 확산 (학회 참가, 원고 발표 등)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참석 및 안건 발제

생산체계 개선 과정 (예시)

생산구조 혁신 방향 설정

업역 제한 폐지라는 궁극적 목표 수립 및 공론화

단계적 개편 방안 등 충격 완화 보완책 마련

업역, 업종, 등록기준 개선의 로드맵 마련

공정경쟁, 소비자 편익을 위한 종합-전문 상호 진출

혁신방향 및 업역폐지에 대응하는 실적 위주 업종 개편

직접시공 유도하는 등록기준 및 전문-종합 연계 강화

단계적 개편안 및 보완장치 등의 세부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산학연 논의, 노사정 합의 등 절차 활용

CHAPTER II

건설생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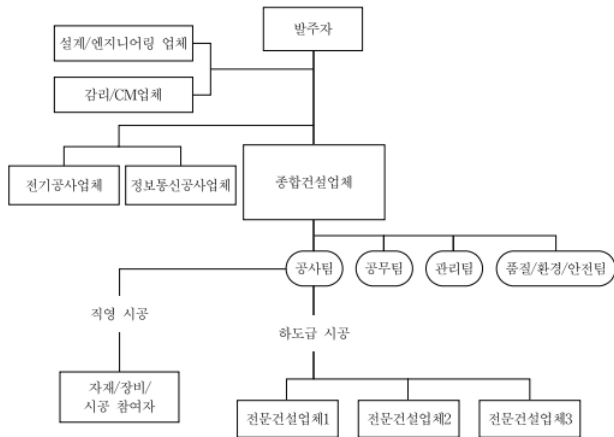
1. 건설생산체계와 산업구조
2.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생산체계와 산업구조

건설생산체계: 분업적 생산 구조

건설생산구조



전통적으로 WBS/OBS 기반의 사업(project, 공사) 구조를 형성

(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류체계

(OBS)

- Organizational Breakdown Structure, 조직분류체계

단계별 분업(설계/시공/운영) 및 시공 단계 분업 (종합/전문) 등 분업을 바탕으로 한 생산 구조

분절된 업역 내에서 치열한 경쟁 중

타 업역으로 진입이 어렵고, 업역 간 갈등 요소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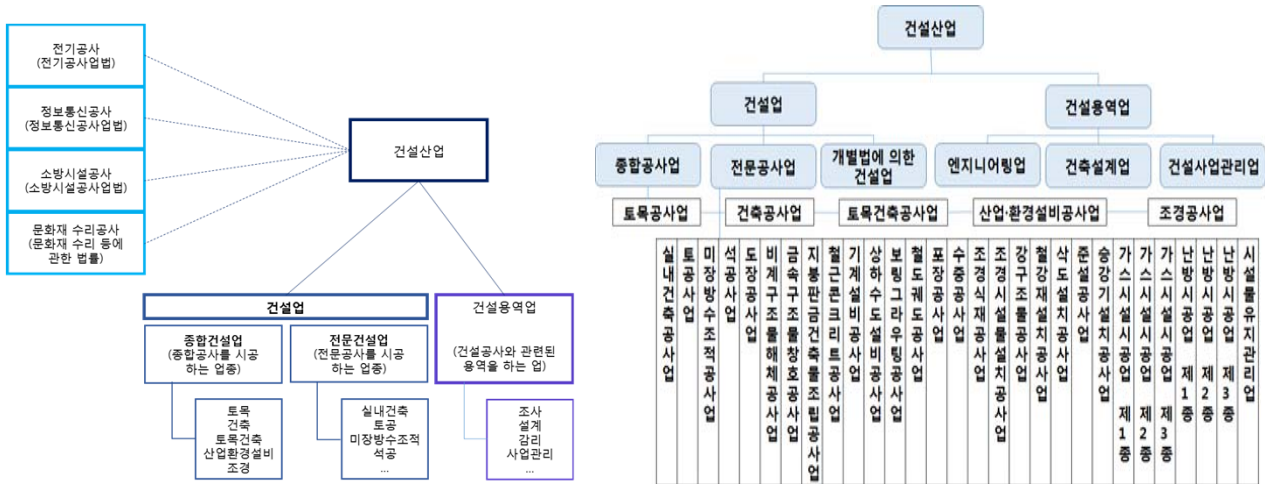
최민수·나경연 (2014).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건설생산체계와 산업구조

건설산업 구성: 업역 및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및 제8조(건설업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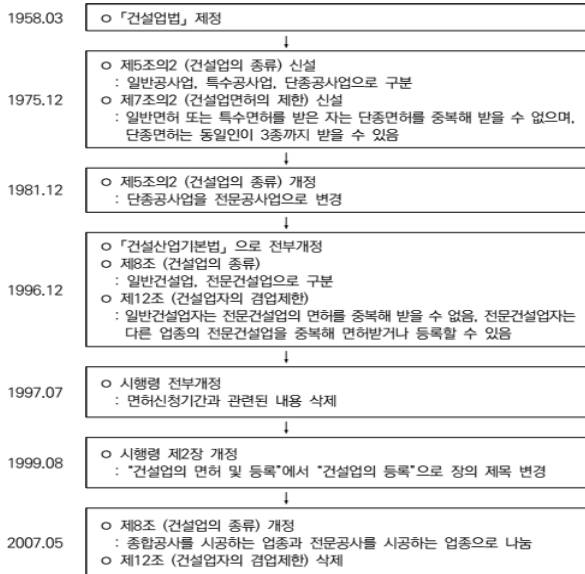
건설산업 =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 + 관련 용역을 하는 건설용역업; 건설업 = 종합건설업(5종) + 전문건설업(25종)



이승복 외 (2016).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2. 건설산업기본법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이승복 외 (2016).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1976년부터 40년 이상 고착화된 영업범위 제한과 하도급 규정

제8조(건설업의 종류)

-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종합공사(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종합공사(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할 수 없다
-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CHAPTER III

국가별 비교

1. 일본
2. 미국
3. 기타
4. 시사점



1. 일본

건설업역 : 업종별 수급 제한

건설공사의 종류를 2개의 일식(一式)공사와 27개의 전문(專門)공사로 분류하고, 업종별 면허 발급

- 일식업종은 복합공사의 원도급자 자격이고, 실제 시공을 위해서는 해당 전문공종의 면허(또는 기술자)가 있어야 함

건설업법 상의 업종은 수급이 아닌 시공에 관한 자격으로, 수급자격은 각 발주처의 기준(재량)에 위임

- 공공공사 발주처별 자율적 기준에 따라 일식업종의 단일공사, 전문업종의 복합공사 도급 모두 가능 (민간공사 제한 없음)

- 도쿄도 발주 기준 : 1) 일반토목공사 → 토목일식 또는 비계·토공, 2) 건축공사 → 건축일식, 3) 해체공사 → 건축 또는 토목 또는 해체, 4) 소각시설 → 타일·벽돌·블록 또는 기계기구설치 또는 청소시설, 5) 수도관갱신공사 → 관 + 수도시설

일본 건설업종체계 요약

업종	시공 가능 공사
건축일식공사업 토목일식공사업	단독으로 시공 가능한 공사 없음 (복합공사 원도급 수주 자격) → 전문공사업을 기본적으로 보유하면서 일식 겸업
전문공사업	27개 각 전문업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목, 미장, 비계·토공, 석, 지붕, 전기, 관, 타일·벽돌·블록, 강구조물, 철근, 포장, 준설, 판금, 도장, 방수, 내장마감, ...)

1. 일본

업종 및 등록기준

- 업종의 겸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전임기술자 배치 시 업종 보유로 인정하는 등 업종별 칸막이가 약함**
 - 건설업체는 시공 가능한 전문업종을 먼저 보유하고, 이와 연관성이 높은 타 업종과 일식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성장
 - 2017년 건설업체(464,889개) 중 토목일식 28%(129,978개), 건축일식 33%(151,580개)
- 자본금 기준이 낮으나 기술능력 기준이 높으며, 업종 추가 및 중복 비용이 작아 다양한 업종 겸업 가능**
 - 자본금 조건이 5백만엔(약 5천만원)으로 한국(2~10억원)보다 낮으나, 기술자 경력(3년)이나 경영자 경험(5년) 등 기술능력 조건이 높음
 - 허가요건이 중복 인정되며, 면허 추가에 따른 비용 크지 않아 다양한 업종 보유 가능

일본 건설업체의 허가 보유 예시

구분	업체명	일식	전문
초대형건설사 (슈퍼제네콘)	카지마	토목, 건축	전문 27종 전체
대형건설사(제네콘)	하세코	토목, 건축	12종(토공, 전기, 관, 강, 포장, 준설, 도장, 방수, 내장, 통신, 조경, 수도)
중형건설사(제네콘)	후지타	토목, 건축	전문 22종 (통신, 착정, 소방, 청소, 해체 미보유)
소형건설사	오오니시(개인)	토목	토공, 포장, 준설, 수도

조재용 (2018).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2. 미국

건설업역 : 업종별 수급 제한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일반엔지니어링(A), 일반건축(B), 전문건설(C, 42종)의 면허를 운영 중

- A : 토목과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건축, B : 중소형 건축물, C : 개별 전문공종

일반(A, B)의 하도급과 전문(C)의 원도급 모두 가능하고, 겸업이 허용되는 등 업역 구분이 약함

- 일반면허로도 하도급이 가능하며, 전문면허를 보유(겸업)할 경우 전문공사 하도급도 가능

- 공사를 구성하는 주요 공종의 전문면허를 보유한 경우, 전문면허로도 복합공사의 원·하도급 수주가 가능

- 부대공사를 직관적으로 규정하여 폭넓게 허용 :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공사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공사

Caltrans (캘리포니아 교통부) 입찰 공고 사례

공사 내용	공사 규모	면허 요건
도로 확장	\$ 120 m	① 일반엔지니어링(A) ② 토공 및 포장(C12)
지하배수로 교체	\$ 560 k	① 일반엔지니어링(A) ② 토공 및 포장(C12) + 하수시설(C42)
도로변 안전지대 재건축	\$ 3.34 m	① 일반엔지니어링(A) ② 일반건축(B) ③ 관련 전문면허(C) 조합

이종광 (2018).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건설생산체계 발전방안"

2. 미국

업종 및 등록기준

건설업을 2종의 일반(엔지니어링, 건축)과 42종의 세부 전문 면허로 구분

- Class A : 토목과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건축, Class B : 중소형 건축물
 - A 는 기술요건 맞으면 단일·복합 모두 가능, B는 원칙적으로 복합공사만 원·하도 가능하나 예외(framing과 carpentry) 존재
- Class C: 42개 세부 전문건설(단일 공사 원·하도), 공사의 주요 공종(소비자 결정)일 경우 복합공사의 원·하도급도 가능

자본금 관련 등록기준이 따로 없으며, 15,000\$(약 1,671만원)의 보증, 의료 및 산재보험과 함께 시공 경력(최근 10년 내 4년)과 필기시험(법, 경영, 전문공사) 등 요구

California 건설업 면허

업종	면허 내용 / 세부 종류
Class A : 일반엔지니어링	전문 기술과 엔지니어링 지식이 필요한 공사 대상 면허, '토목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합친 것과 유사한 공종 범위
Class B : 일반건축	2개 이상 공종이 포함된 복합 건축 공사만 가능한 면허, '건축공사업'과 유사한 공종 범위
Class C : 전문건설	C-2 건물 단열 공사, C-4 보일러 공사, C-5 골조 및 목공, C-6 캐비닛 및 목재 마감, C-7 저전압 공사, C-8 콘크리트, C-9 건식 벽재, C10 전기공사, C11 엘리베이터, C12 토공 및 포장, C13 펜스 등 울타리, C15 카펫 및 마루 ...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2018). "California Contractors License Law & Reference Book"

3. 기타

유럽 (영국, 독일)

건설업 영위를 위한 면허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영업 범위나 업종 구분의 강제력이 없음

- 석면 등 특수 업종을 제외하면 건설업 진입 자격 및 관련 규제가 없는 실정

발주자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공사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별 공종에 따른 유자격자 제한 입찰 활용

- 발주자의 업체 자격심사를 지원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기관 존재
 - 영국 Constructionline, 독일 PQ VOB 지정 전문업체
- 발주자, PQ 기관 등 각자 목적에 따른 실용적 업종 구분
 - Constructionline 834개, PQ VOB 108개 등

아시아 (싱가포르, 홍콩)

싱가포르

- 종합면허는 공종이 아닌 규모에 따라 분류, 전문업종(6개) 미포함 전문공사는 종합면허로 수행 가능
- 공공공사 도급을 위한 별도 등록업종(건설청) 존재
 - 건설 및 시공(18종), 기계·전기(14종), 노무(10종), 조달(14종) 등

홍콩

- 임시면허를 거쳐 확정면허를 취득하는 단계별 면허에 따라 입찰 자격이 달라짐
 - 회사등록처에 신고하면 대부분 허용 후 임시면허 취득
 - 임시면허 취득 후 2년 간 시공실적을 확보한 후 확정면허 수여

최민수·나경연 (2017). "건설업 등록기준의 개선 방안"; Constructionline 웹사이트. "Work Categories"; PQ VOB 웹사이트.; BCA 웹사이트.

4. 시사점

해외 생산체계의 업역 · 업종 · 등록기준

시공자격

일본 : 해당 전문업종(27개) 허가로 시공 가능

일식업종은 시공자격 아닌 복합공사 원도급 자격 가능

미국 : 일반엔지니어링, 일반건축, 전문(42종) 중 해당 업종 면허 취득 필요

부대공사 등 업무범위는 유연

수급자격

일본 : 발주자 재량에 따라 일식, 전문에 도급 가능

공공공사 발주자 고유 유자격자명부 등록업체 수급

미국 : 발주자가 공사 주된 부분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시하여 입찰 가능

공공공사 등록업자 명부 존재, 직접시공 등 통제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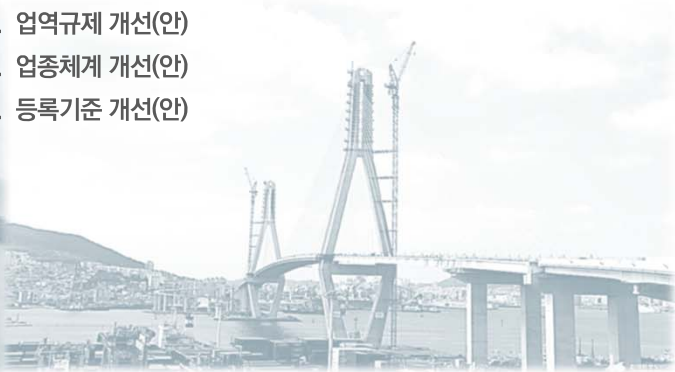
해외 건설업 생산체계의 시사점

- ◆ 업역 : 종합=원도급, 전문=하도급의 이분법적 업역 부존재
- ◆ 업종 : 업종의 구분은 수급자격이 아닌 시공자격으로만 운영
- ◆ 등록 : 자본금 요건보다는 기술 및 인적 요건을 더 중시

CHAPTER IV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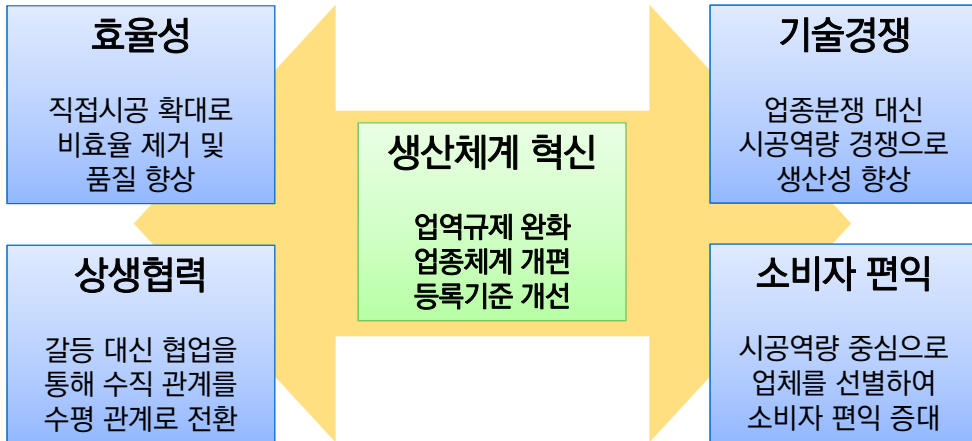
1. 생산체계 혁신 방향
2. 업역규제 개선(안)
3. 업종체계 개선(안)
4. 등록기준 개선(안)



1. 생산체계 혁신 방향

생산체계 혁신의 기본 방향

- ◆ 선진국 사례를 감안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고, 업체간 공정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체계를 전면 개편
 - 시장 충격의 완화 및 건설업계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 방안과 단계적 개편방안도 검토



2. 업역규제 개선(안)

종합-전문 업역규제 : 현황과 문제점

현황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종합·전문 공사업의 업무영역(시공자격)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 유지

-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단일공사는 전문업체(29종)만 수급 가능하도록 업역을 제한

구분	복합공사	단일공사
원도급	종합 O, 전문 X	종합 X, 전문 O
하도급	종합 △, 전문 O	종합 X, 전문 O

- (예) 도로공사(철콘+토공+포장) : 토목업체(종합)만 수급 가능, 전문업체 컨소시엄 또는 4 업종 보유 전문업체의 수급 불가능

문제점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 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하여 여러 문제점 초래

- ① 시공역량의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 등 영업에만 치중하게 하여 직접시공 회피 및 페이퍼컴퍼니 생존
- ② 사업물량 대부분을 원하도 관계에 의존하게 만들어 갑을관계가 불가피하고 불공정 관행이 확산
- ③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시공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 및 종합업체로의 성장 저해
- ④ 종합-전문 간 기술경쟁을 차단하고, 시공역량과 책임에 따른 구분이 아닌 업역에 따른 시장보호 목적으로 변질

2. 업역규제 개선(안)

종합-전문 업역규제 개선 : 기본 방향

개편 원칙

- 생산자의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 및 전문업종이 상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급 및 시공을 허용

⇒ 업역 규제 폐지 (건설법 제16조 개정)

종합과 전문업체 모두 상대 업역의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직접시공해야 함

- 입찰에 참가하는 시점에 기술자(전문업체 → 종합공사), 장비(종합업체 → 전문공사)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함

생산자의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 종합 및 전문업종이 상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

2. 업역규제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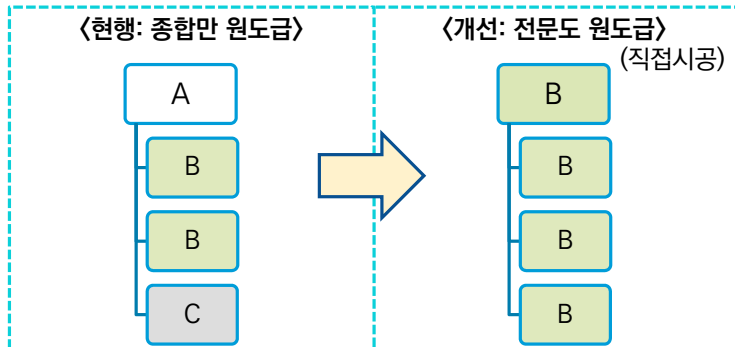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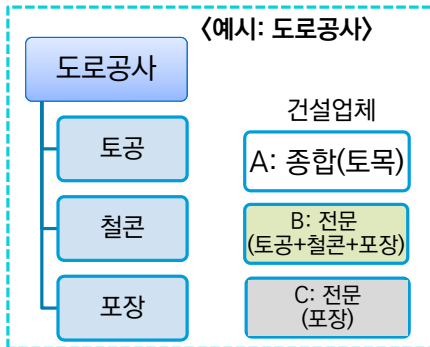
종합-전문 업역규제 개선 : 기본 방향

종합공사

-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합공사의 원도급 허용

도로공사 (토공 + 철콘 + 포장)

(현행) 종합업체(토목)만 수급 가능 ⇒ (개선) 종합(토목)과 전문(토공 등 3종 보유) 모두 수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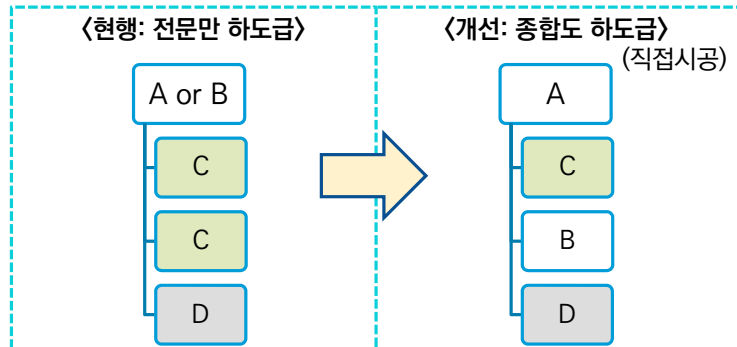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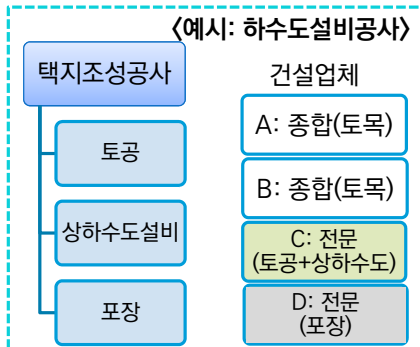
2. 업역규제 개선(안)

종합-전문 업역규제 개선 : 기본 방향

전문공사

종합업체의 등록된 업종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전문공사 원도급 및 하도급 수급 허용

- 하수도설비공사 : (현행) 상하수도업(전문)만 수급 가능 ⇒ (개선) 토목(종합)도 수급 가능 (건축 X)
- 인테리어 공사 : (현행) 실내건축(전문)만 수급 가능 ⇒ (개선) 건축(종합)도 수급 가능 (토목 X)



2. 업역규제 개선(안)

종합-전문 업역규제 개선 : 추진 대안

◆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기간(최소 1년)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대안을 검토

① 규모별 시장 개방 : 금액 구간을 설정하여 점차적 적용 구간을 확대

- (예시) 4~100억(2020년) ⇒ 0~300억(2021년) ⇒ 모든 공사(2022년)
- (장단) 소규모 업체에 대한 시장 보호 기능이 있으나, 금액범위 설정에 대한 논란과 쪼개기 발주 등 편법이 우려

② 공종별 시장 개방 : 복잡성에 따른 우선 시행 공종을 설정한 후 확대

- (예시) 토목/조경(2020년) ⇒ 산업설비 포함(2021년) ⇒ 건축 포함 모든 공사(2022년)
- (장단) 직관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하나, 공종의 선정 과정에서 논란과 형평성 문제 발생

③ 주체별 시장 개방 : 공공공사 우선 적용 후 민간공사로 시행 확대

- (예시) 공공공사(2020년) ⇒ 모든 공사(2022년)
- (장단) 공공공사를 먼저 개방하여 시범사업 운영 효과 기대되나, 건축 등 복잡한 공종에서는 발주자의 혼란 우려

발주자의 전문성과 공사관리 능력, 공종 분류 적용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 토목(2020년) ⇒ 모든 공공(2021년) ⇒ 모든 공사(2022년)' 순으로 개방하는 ②+③ 안이 합리적

2. 업역규제 개선(안)

종합·전문 업역규제 개선 : 보완 장치

상호 시장 진출 활성화 조건 검토

- 종합업종과 전문업종의 등록기준 차이에서 오는 형평성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
 - 입찰 시점에 기술자, 장비 등 상호 시장 진출 시 갖춰야 할 조건 설정
- 많은 업종을 한번에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급 조건의 논의가 필요
 - 전문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종합공사의 세부 전문업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력업종(예: 공사금액 50~90%) 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원도급을 허용할지 여부와 기준 마련
- 종합업체의 하도급 공사 수급을 위한 하도급 규제의 개선이 필요
 -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 관련 규제의 완화와 동시에, 소규모 하도급공사(예: 4억원 미만)에 진입 제한 등 영세 시장 보호를 고려

실적 인정 기준 마련

- 상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전문공사의 상호 실적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 (예) 종합업체의 직접시공 부분 등 종합공사 실적 일부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 (예)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입찰 참여 시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
- ⇒ 법령 개정 후 업역 개편 시행 전까지 공공 발주 가이드라인 및 실적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3. 업종체계 개선(안)

업종 체계 : 현황과 문제점

현황

계획·관리·조정 여부에 따라 종합과 전문을 구분하고, 종합은 구조물 기준 5종, 전문은 공종별로 29종으로 분류(건설법 시행령 별표1)

- 1997년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산업설비업(종합),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 신설 등 현행 체계 확립

일본, 미국 등은 국내와 유사한 30~40여개 업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8개, 독일과 영국 등은 단일 업종체계 운영

- 특정유형이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발주자 선택 시 참고하기 위해서는 실적 관리체계도 중요

• 영국은 단일 업종이나 'Constructionline'을 통해 834개 세부공종의 실적 관리

문제점

현행 건설업종(종합 5개, 전문 29개)은 시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업종간 분쟁이 잦고 체계성도 떨어진다는 지적 다수

- 업종에 따라 시공 및 수급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위반 시 무등록 시공으로 제재(영업정지, 과징금)하고 있어 영업범위 갈등 발생

- 특히 일부 업종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세분화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 지적 존재

• 토건(종합, 토목+건축)은 업역 완화 시 모든 공사 가능해져 추가 문제 발생 가능

• 시설물유지관리(전문)는 업무범위가 너무 넓게 인식되어 업종간 갈등 존재

3. 업종체계 개선(안)

업종 체계 개선 : 단기 개편안

◆ 업역 규제가 유지되는 2019년에는 갈등완화 차원의 소규모 정비, 2020년부터 전문업종 통합화 등 대규모 개편 착수

업역 개편 유예기간(2019년)에 업무범위로 인해 실용성이 낮거나 타 업종과의 갈등 소지가 큰 업종을 정비

① 토목건축 분할

- 업역 개편 방안에 따라 모든 복합·단일 공사의 시공이 가능한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업체는 토목과 건축으로 등록 의제

② 유사업종 통합

- 강구조물-철강재 설치공사업은 교량·건축물 등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업종으로 구분의 실익이 낮아 통합 검토 필요

③ 시설물유지관리업 관련 갈등 완화

- 소비자의 편의성에 따라 2개 이상 공종의 개량·보수·보강 공사가 가능한 만능 면허로 인식되면서 다른 업종과의 갈등 심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직접시공을 강조하는 동시에 업무범위 조정 및 겸업 지원을 통한 갈등 완화 논의 필요

업종의 단기 개편안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의 확정이 필요 (2020년 시행 목표)

3. 업종체계 개선(안)

업종 체계 개선 : 증장기 개편안

- ◆ 경직적 업종주의 방식의 규제를 실적·역량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발주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건설업자의 기술경쟁을 유도
 - 업종주의 방식은 엄격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반면,
 - 실적주의 방식은 간막이는 최소화하되 세부 실적 공시를 통해 발주자 의사결정 지원

업종의 전면적 개편

- 불필요한 업종 간 분쟁을 줄이고, 실적·기술력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 유도
- 2019년 : 업종 개편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 및 관련 연구용역 실시 (건산연, 건정연 등 여러 연구기관의 합동 연구 권장)
- 2020년 : 업역 개편이 공공공사에 전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2021년)부터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급 시 발주자의 혼란과 업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29개의 전문업종을 통합하는 방안 마련
- 전문업종 중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대분류화
- 전문업종의 세분류로 인한 공사별 복잡성 및 관련 갈등과 논쟁 완화 기대
-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 시 의사결정 지원 필요
-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업종별 전문성 구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검토

* 업종별 실적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실적, 기술능력, 행정 이력 등을 종합하여 우수업체를 일정 주기마다 공시

4. 등록기준 개선(안)

건설업 등록기준 : 현황과 문제점

현황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건설법 시행령 별표2)

- 건설기술자 1~11명(기술능력), 자본금 2~12억원, 사무실 등 시설 및 장비 필요
- 자본금의 20~50%를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1999년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등록기준의 일부조정을 거쳐 현행 수준이 유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건설업 등록기준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며, 시장규모 대비 업체 수도 적은 편

- 건설업체 수 : 한국 6.1만, 일본 49만, 미국 67만, 영국 30만
- 영국, 독일 등 유럽은 건설업체에 별도의 등록기준을 요구하지 않음

문제점

시공역량과 관련성이 낮은 자본금 기준이 엄격하여 가장 납입 등을 통한 일시적 기준 충족 사례 빈번

- 3년마다 등록기준을 점검하는 주기적 신고제가 폐지 (18년 1월)되어 부실 의심업체에 대해서만 점검 시행

요구되는 기술자 수는 많은 편이나, 자격증만 보유 하면 현장경험이 필요치 않아 시공역량 검증 한계

- 기술자 수(한국 1~11명, 일본·미국 1명)만을 채우기 위한 자격증 대여 문제 발생
- 등록(면허)제도가 존재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보유 기술자의 자격요건에 별도의 경력기준을 요구하여 업체의 시공역량을 평가
- 미국 : 책임경영자, 책임기술자에게 4년 이상의 근무경력 요구
- 일본 : 대형면허의 경우 5년 근무 + 2년 대형공사 수행 요구

4. 등록기준 개선(안)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자본금 기준 완화

- 주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 등 보조 수단을 통한 업체 선별 기능은 강화
 - 가장 납입 등 부조리에 취약하고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자본금 기준의 단계적 하향 필요
 - (예시) 2019년 70% ⇒ 2020년 50% (업체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시기 조정 필요)
- 자본금 기준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증가와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 조정
 - (예시) 보증가능금액을 현행 자본금의 20~50% 수준에서 2019년 30~60%, 2020년 50~80% 수준으로 상향

기술능력 기준 강화

- 실제 시공과 직결되는 기술자 조건은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경력 요건을 강화하여 시공 역량을 제고(2020년)
 - 업계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술자의 수는 현행 유지하되, 경력요건 등 기술자 질적 수준 관련 조건을 추가
 - 기능인등급제 시행에 따라 일부 업종(품질 및 안전 관련 불만이 잦은 공종)에 기능인력 요건 추가 검토 필요

건설업체 성장경로 제시(종합-전문 연계 등록)

- 전문업종을 등록하고 1~2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시공 실적 검토)한 자에 한하여 종합업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전문에서 종합으로 자연스러운 건설업체의 기업성장을 유도하면서, 종합업체도 핵심 공종에 대해 전문공사 실적을 가지는 등 직접시공 문화 조성

1. 노사정은 생산성 향상, 공정경쟁 촉진, 상생협력 활성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취지에 따라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

- ① 이를 위해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원칙적으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기업이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건설업종의 구분 및 업종별 업무내용은 기술의 발전과 공법 융복합 추이를 반영하고 업종 간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 ③ 건설기업의 시공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기능 자격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적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 중에서

감사합니다

